

『인천광역시 전물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전물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전물군경 유가족에 대해 인천광역시에서 별도 지원을 함으로서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 나. 지원대상 및 수당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안제6조)
- 라.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전몰군경 유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전몰군경 유족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정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 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수준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규정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하 생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1,346명 (2016년 기준)]로 월 5만원으로 전제함
※ 전몰군경 유가족의 고령으로 매년 사망자 10명(추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항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전몰군경 유족수당	807,600	801,600	795,600	789,600	783,600	3,978,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 근거 : 조례 제3조 제2항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다문화보훈봉사과장 최충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세출	전물군경 유족수당	807,600	801,600	795,600	789,600	783,600	3,978,000
	소계	807,600	801,600	795,600	789,600	783,600	3,978,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807,600	801,600	795,600	789,600	783,600	3,978,000
	일반회계	807,600	801,600	795,600	789,600	783,600	3,978,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